

환경부
보도자료

- '06. 4. 배포
- 사진 없음
- 총 11 쪽

환경정책실	김영훈 과 장	전화	02-2110-7965
유해물질과	정진현 사무관	(메일)	gry0924@me.go.kr



- 다이옥신의 매체별 환경기준 및 산업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설정, 다이옥신 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마련 등 다이옥신의 체계적인 관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 소각시설(3,894개소) → 소각시설 + 철강, 화학 등 산업시설(4,785개소)

- 또한 PCBs 함유대상기기인 폐변압기 등에 대한 국가목록 작성과 적정수거·처리체계의 구축으로 PCBs 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며,
- 스톡홀름협약의 국내비준에 대비하여 다이옥신, PCBs를 포함한 12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국가이행계획이 수립되고 대상 물질의 취급제한과 관련 폐기물의 안전처리 및 토양오염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 스톡홀름협약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근절 및 배출저감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으로 '06년 3월 현재 151개국 서명, 120개국 비준

※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 독성·잔류성·장거리 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에 위해를 초래하는 물질

□ 그간의 다이옥신 관리는 소각시설에 초점이 맞추어져 2001년 이후 지속적인 대상 확대와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2004년 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량이 2001년 대비 23%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으나,

○ 전체 배출량의 13%(2001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던 철강, 화학 등 산업시설의 다이옥신 배출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국내·외적으로 제기되었다.

○ 지난해부터 수차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는 PCBs의 경우는 변압기 등 PCBs 오염기기에 대한 정확한 국내 실태 파악, 불법 처리 및 재활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수거·처리체계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 또한 우리나라가 2001년 가입하고 3월 현재 이미 120개국이 비준한 스톡홀름협약의 국내 비준에 대비하여 협약이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의 이행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상황이다.

□ 이에 환경부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스톡홀름협약('04년 5월 발효)”의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인체 및 환경 중에 잔류하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 내용

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제조·사용금지 또는 제한

- 독성·잔류성·생물농축성·장거리 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에 위해를 초래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나 현재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HCB, 미렉스(농약류) 등의 제조, 수출·입,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②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기준 마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사람과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해성을 평가하여 환경기준과 일일허용노출량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 일일허용노출량(TDI) : 유해물질이 인체에 노출되어도 유해영향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체중 당 일일노출량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지역별, 매체별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 측정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질별, 환경매체별 (대기·수질·토양·폐기물·생물) “공정시험방법”을 제정한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토양오염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토양보전대책지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규제

- 현재 소각시설은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으나 철강, 화학 등 산업시설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 국제적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철강 소결시설, 비철금속 등의 배출원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관리하도록 하였다.

- 다만,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더라도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배출저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가 측정을 실시하도록 하며 일정규모 이상 시설의 사업자는 3년마다 주변지역 환경을 평가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④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 및 함유기기 안전관리

-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분류 및 처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며 처리 기준 등을 지정하도록 하고
 - 특정 종류 및 용도에 국한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2차 오염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 변압기, 콘덴서 등 PCBs 함유기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가목록을 작성하고 특정관리대상기기에 “안전상 주의표시”를 하게 함으로써 인체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 PCBs 함유폐기물을 2015년까지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 주도의 “환경안전사업단”을 설립·운영하도록 하였다.
- 동 법률안은 향후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참고자료>

- 붙임 :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주요내용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국내 관리현황
3. 2001년도 다이옥신 배출목록
4. 산업시설 다이옥신 배출저감 사업의 추진경과
5. PCBs 폐절연유 및 폐변압기 발생·처리현황
6.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체계
-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주요 내용

□ 스톡홀름협약 개요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위해로부터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동 물질의 생산·사용·배출을 관리하는 협약으로 '04.5.17에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01.10.4에 서명하여 비준 준비중

□ 협약의 주요 의무사항

- 의도적으로 생산되는 POPs 제품의 생산·사용 금지 또는 제한
 - 대상물질 : 알드린, 클로르단, 디엘드린, 엔드린, 헵타클로르, 미렉스, 헥사클로르벤젠(HCB), 독사펜, PCBs, DDT(10종)
 - PCBs 함유 장비의 사용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저감 및 근절
 - 특정면제 제도를 통해 동 물질을 제한된 용도로 생산·사용한 것은 가능
- 비의도적으로 생산되는 POPs 배출저감 또는 근절
 - 대상물질 : 다이옥신, 퓨란, HCB, PCBs
 - 배출원

중요 배출원	일반 배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소각시설 ·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멘트소성로 · 철강소결시설 · 2차금속생산시설(구리, 아연, 알루미늄) · 염소사용 펄프 표백 공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장 · 기타 금속 산업의 열공정 · 각종 산업용 연소 배출 · 염소계 화학물질 생산공정

- 국가 배출목록 작성을 통한 현재 및 향후 배출량에 대한 평가
- 배출시설에 최적가용기술(BAT)/최적환경관리방안(BEP) 적용
- 적치물과 폐기물로부터 배출저감 및 근절
 - POPs 적치물·폐기물 현황 파악 및 친환경적 폐기
- 국가이행계획서의 제출
 - 협약 발효 후 2년 이내에 국가이행계획을 당사국총회에 제출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국내 규제 현황

화학물질	독성 (증상)	용도	국내규제현황			
			농약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농도)	폐기물 관리법	비고
알드린 (Aldrin)	두통, 초조불안, 식욕감퇴, 구토	살충제	등록취소/금지 (‘69)	금지(0.1%) (‘99)	-	-
클로르단 (Chlordane)	발암성, 편두통 기관지염, 부비강염	“	등록취소/금지 (‘69)	금지(1%) (‘99)	-	-
디엘드린 (Dieldrin)	발암성, 두통, 초조불안, 구토, 식욕감퇴	“	등록취소/금지 (‘70)	금지(1%) (‘99)	-	-
엔드린 (Endrin)	신경시스템 손상, 홍분, 경련	“	등록취소/금지 (‘69)	금지(1%) (‘99)	-	-
헵타클로르 (Heptachlor)	발암성, 간손상, 신경시스템 손상	방충제	등록취소/금지 (‘79)	금지(6%) (‘99)	-	-
미렉스 (Mirex)	발암성, 간손상, 척추축만	화염억지제 살충제	미도입			
독사펜 (Toxaphene)	발암성, 호흡장애, 폐·간 손상	살충제	등록취소/금지 (‘82)	금지(1%) (‘91)	-	-
헥사클로르벤젠 (HCB)	발암성, 피부손상, 복통, 신경쇠약	살충제 부산물	미도입			
다염소화비페닐 (PCBs)	간질환, 생물의 중성화, 기억력 장애	산업용 절연제 부산물	-	금지(50ppm) (‘96)	지정폐기물 (2ppm이상)	전기사업법 사용금지 (‘79)
디디티 (DDT)	발암성	살충제	등록취소/금지 (‘69)	금지(1%) (‘91)	-	-
다이옥신 (Dioxin)	발암성, 피부손상, 간질환	부산물 (소각·산업 공정)	-	-	소각시설 배출허용 기준 (‘97)	-
퓨란 (furans)	발암성, 간질환, 피부손상		-	-		-

<붙임 3>

2001년 다이옥신 배출목록

		I-TEF (g-ITEQ)	WHO-TEF (g-WHOTEQ)		
		(A)	(B)	Co-PCBs(C)	(B+C)
		163.5	-	-	193.8~198.8
		728.16	-	-	871.6~894.2
		891.6(87.4%)	987.4	78.0~105.6	1,065.4~1,093 (87.4~87.7%)
		96.4	103.3	10.3	113.6
		15.0	15.7	4.1	19.8
		3.1	3.4	0.2	3.6
		0.6	0.5	0	0.5
		9.8	10.3	0.7	11
	()	4.1	4.8	0.3	5.1
		128.9(12.6%)	138	15.6	153.6(12.3%)
		1,020.5	1,125.4	121.2	1246.6

<

>

	I-TEF (g-ITEQ)	WHO-TEF (g-WHOTEQ)			'01 (%)
	(A)	(B)	Co-PCBs(C)	(B+C)	
'01	891.6	987.4	78.0~105.7	1065.4~1093.1	100
'04	209.9	232.4	18.4~24.9	250.8~257.3	23.5

1) I-TEF는 다이옥신/퓨란 17종에 대한 독성등가환산계수 설정

2) WHO-TEF는 다이옥신/퓨란 17종과 12종의 Co-PCB에 대한 독성등가환산계수 설정

산업시설 다이옥신 배출저감 사업의 추진경과

□ 다이옥신 배출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05.7)

- 협약 기간 : '05. 7월~'10년
- 협약 목표 : '01년 대비 산업부문 다이옥신 배출량을 '08년까지 30%, '10년까지 50% 이상 저감
- 협약 당사자 및 역할
 - 기업: 다이옥신 배출가능성이 있는 철강, 비철금속, 비금속, 화학분야 19개 기업은 자율저감계획을 수립 및 이행
 - 시민단체(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협약 성과 모니터링
 - 환경부: 방지시설 설치 용자금 지원 및 선진국 기술소개 등 산업계의 자율저감노력을 지원하고 다이옥신 저감정책 수립
- 협약 추진실적 관리
 - 협약 참여기업은 매년 이행실적 및 다음연도 추진계획 수립
 - 환경부는 정부·시민단체·전문가로 구성되는 추진실적 평가단을 구성하여 기업별 추진실적 및 협약 목표달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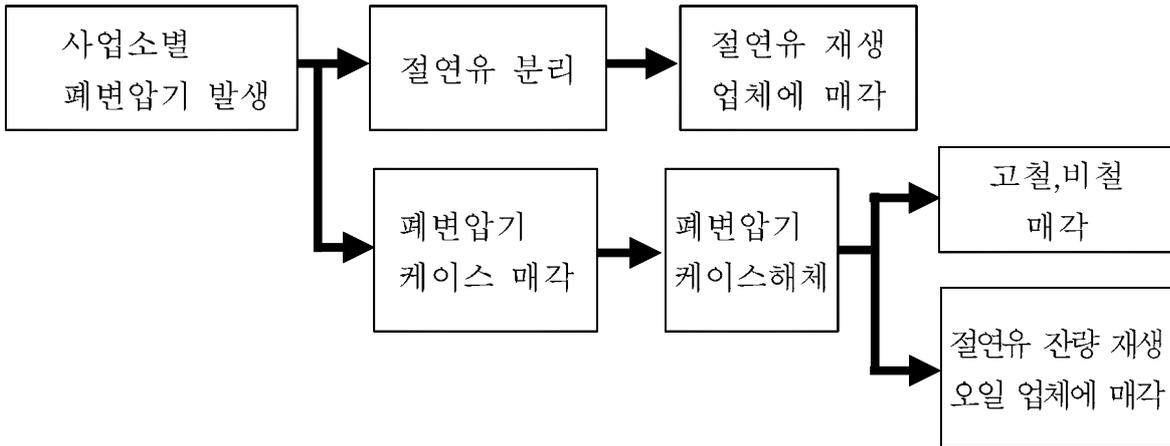
□ 정책협의회 구성

- 주요 기능: 산업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등 다이옥신 저감 정책 논의
- 구성 및 운영
 - 철강, 비철금속, 시멘트, 화학 등 산업부문별로 정부·산업계·시민단체·전문가 약 12~13인으로 구성
 -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시까지 운영
- 진행 현황
 - 산업 부문별 1~3회 회의 개최
 - '06년 상반기 중 업체별 이행계획서 제출 예정

<붙임 5>

PCBs 폐절연유 및 폐변압기 발생·처리 현황

□ 폐절연유 및 폐변압기 처리 경로



□ 폐변압기 및 폐절연유 배출량(한국전력)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총계
폐변압기(대)	71,096	59,986	55,584	53,083	54,780	294,529
폐절연유(kℓ)	2,377	2,312	2,668	2,972	3,281	13,610

□ PCBs 오염 폐기물 해외이전 처리현황

년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총계
처리량(톤)	111.25	114.91	55.34	27.18	-	334.51	643.19

□ 폐유 및 폐변압기 재활용업체 현황

구분	경기인천	강원	충청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총합
폐유	23	9	18	4	9	-	25	88
폐변압기	2	-	-	-	2	4	5	13
총계(개소)	25	9	18	4	11	4	30	101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체계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 금지 및 제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의도적인 제조·수출입·사용 제한
- 다이옥신류등 부산물POPs에 대한 환경관리기준 설정
 - 일일허용노출량(TDI), 환경기준 설정
- 다이옥신류등 부산물POPs 배출시설 관리
 - 배출허용기준 설정, 자가측정 및 주변환경영향조사, 사고로부터 환경오염 예방
-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 관리
 - 폐기물 처리기준 설정 및 재활용 제한
- 특정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기기 등의 관리
 - 특정관리대상기기 지정 및 국가목록 작성, 처리기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의해 오염된 토양 관리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안전사업단 설립

< 구성 체계 >



다이옥신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제5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위원회의 설치) 제6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실무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제조·사용금지 및 오염도 조사</p> <p>제8조(취급제한·금지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지정) 제9조(일일허용노출량의 설정) 제10조(환경기준의 설정) 제11조(측정망의 설치·운영) 제12조(공정시험방법)</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규제</p> <p>제13조(배출허용기준) 제14조(개선명령 등) 제15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제16조(배출원 및 배출량조사) 제17조(배출시설의 관리) 제18조(총량규제) 제19조(사고시의 조치)</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처리</p> <p>제20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 분류) 제21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처리 기준 등) 제22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제23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처리) 제24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강화된 처리증명 등)</p>	<p>제25조(재활용의 제한) 제26조(장부의 기록·보존)</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특정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p> <p>제27조(국가목록의 작성) 제28조(특정관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제29조(특정관리대상기기의 처리기한)</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오염된 토양의 관리</p> <p>제30조(토양오염대책기준) 제31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안전사업단</p> <p>제32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안전사업단의 설립) 제33조(임원 및 직원) 제3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35조(비밀누설의 금지) 제36조(사업) 제37조(수수료) 제38조(정부의 지원) 제39조(민법의 준용) 제40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보칙</p> <p>제41조(기술개발 등의 지원) 제42조(국제협력) 제43조(보고 및 검사) 제44조(청문) 제45조(행정처분의 기준)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장 벌칙</p> <p>제47조(벌칙) ~ 제49조 제50조(양벌규정) 제51조(과태료)</p>
--	---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동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폐기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협력 증진 및 국제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라 함은 독성·잔류성·생물농축성·장거리 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에 위해를 초래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취급제한·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하 “취급제한·금지물질”이라 한다)”이라 함은 스톡홀름협약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말한다.
3. “다이옥신류”라 함은 다이옥신 및 이와 독성, 물리·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 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장폐기물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함유하거나 이에 오염된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 다만,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조에 따른 해양에서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는 관계법률에 따른다.

제4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①환경부장관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위원회의 설치) ①정부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심의 및 그 추진실적 평가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정책의 조정
3. 스톡홀름협약 관련 국제적 협력에 관한 사항의 조정
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련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업무의 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산업계, 학계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조정·검토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제조·사용금지 및 오염도 조사

제8조(취급제한·금지물질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 또는 B에 규정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지정한 때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의 명칭, 제한 또는 금지의 내용, 취급에 관한 주의사항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수입·영업허가 및 수출승인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일일허용노출량의 설정) ①환경부장관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한 기준으로 인간이 평생에 걸쳐 계속적으로 다이옥신류에 노출(호흡, 피부접촉 또는 섭취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일일허용노출량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일허용노출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환경기준의 설정) 환경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측정망의 설치·운영) ①환경부장관은 전국의 대기·수질·토양·

하상퇴적물·생물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오염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관할구역안의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구역·측정항목·측정주기 등을 명시한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을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측정망을 운영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공정시험방법) 환경부장관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서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산업규격을 따른다.

제3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제13조(배출허용기준) ①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환경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저감기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개선명령 등) ①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배출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당해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①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배출원 및 배출량조사) ①환경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배출시설의 관리) ①배출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시험방법에 의해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자 또는 배출자들은 당해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배출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하여야 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주기,

측정결과와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범위·결과보고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총량규제) ①환경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의 경우에는 당해 구역안의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이하 “총량규제”라 한다)할 수 있다. 단, 업종별 배출량을 고려하여 총량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량규제의 항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고시의 조치) ①배출자는 배출시설의 고장, 파손 등 기타의 사고가 발생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대기 중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수역에 배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고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강구하고, 이를 신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②배출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고의 상황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사고가 발생한 배출시설의 배출자에 대하여 사고의 확대 또는 재발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

제20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 분류)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폐기물로 보며,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22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배출자의 의무)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 ①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25조 규정에 따라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폐기물배출자는 당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소량배출자의 경우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대신 확인받을 수 있다

1. 폐기물배출자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처리계획서(수집·운반하는 자가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자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처리계획서)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분석결과서(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에 의한 분석결과에 한한다.)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처리를 위탁한 경우 위임받은 처리자의 수탁확인서

③폐기물배출자,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운반하는 자(이하 “폐기물운반자”라 한다) 또는 처리자(이하 “폐기물처리자”라 한다)는 당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폐기물처리자는 인계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폐기물운반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운반중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언제나 지녀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의 사본
2.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인계서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인계서의 작성방법, 작성 및 인계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산처리 기구에 등록하고, 인계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동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한 경우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인계서를 작성 및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강화된 처리증명 등)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 내지 제25조의 6의 규정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강화된 처리증명 및 완화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폐기물”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로,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은 “「다이옥신등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관리에관한특별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으로,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는 “「다이옥신등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관리에관한특별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인계서”로, “제12조의 규정”은 “「다이옥신등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관리에관한특별법」 제21조의 규정”으로 본다.

제25조(재활용의 제한) ①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 및 용도외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장부의 기록·보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폐기물의 수립·운반·처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최종기재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
2.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자

②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는 자는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최종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특정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

제27조(국가목록의 작성) ①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를 함유하거나 이에 오염된 기기·설비·제품(이하 “기기등”이라 한다)의 목록(이하 “국가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물질을 함유하거나 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기등(이하 “특정관리대상기기”라 한다)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목록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8조(특정관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①환경부장관은 특정관리대상기기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함유하거나 이에 오염된 기기 등의 소유자에게 안전관리상의 주의 표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특정관리대상기기의 처리기한) ①특정관리대상기기 소유자는 당해 기기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제21조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특정관리대상기기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내에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6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오염된 토양의 관리

제30조(토양오염대책기준)①환경부장관은 대책이 필요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의한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대책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안전사업단

제32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안전사업단의 설립) ①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개선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안전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사업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사업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사업단의 사무소 등 정관기재사항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임원 및 직원) ①사업단에 이사장 1인과 이사 3인 이내 및 감사 1인의 임원을 둔다.

②사업단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이사장·이사 및 감사는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사업단에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두며,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⑥사업단의 임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34조(별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사업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5조(비밀누설의 금지) 사업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사업) ①사업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수거·보관·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업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인한 오염토양의 정화에 관한 사업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안전처리 및 관리에 관한 연구·조사·통계 및 홍보사업

4. 관련 사업장 종사자, 특정관리대상기기 관리자에 대한 교육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②사업단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거나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7조(수수료) 사업단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배출자에게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사업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제39조(민법의 준용) 사업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①환경부장관은 사업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사업단에 대하여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사업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단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41조(기술개발 등의 지원) 환경부장관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기술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 처리 시설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인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시설

제42조(국제협력) 정부는 스톡홀름협약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국가와의 국제협력을 통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련 정보 및 기술을 교환하고, 인력교류·공동조사·연구개발 등에 상호 협력하며,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인한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저감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3조(보고 및 검사) ①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 당해 시설 또는 사업장 등

에 출입하여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 제13조의 규정을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처리기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기기처리기한 그리고 제30조에 규정을 따른 대책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거나 관계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사업자
2.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배출자
3.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기기의 소유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4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명령

제45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환경부소속 환경과학원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장 별 칙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처리한 자

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4.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관리대상기기를 기한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자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3.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 또는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6.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한 자
7.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인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한 후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인계서에 갈음하는 자료를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전송한 자

제5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 내지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동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2. 제23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인계서를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시기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또는 전송)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자
3. 제2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내보이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6.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닌 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2.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 배출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자가측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한 측정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사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한 것으로 본다.